

##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학칙

제정일 : 2007. 03. 01.  
개정일 : 2009. 09. 01.  
개정일 : 2011. 03. 01.  
개정일 : 2012. 10. 23.  
개정일 : 2014. 10. 02.  
개정일 : 2015. 03. 13.  
개정일 : 2015. 10. 23.  
개정일 : 2016. 03. 25.  
개정일 : 2016. 09. 01.  
개정일 : 2016. 11. 16.  
개정일 : 2017. 02. 2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영상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자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과정 및 전공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두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단기 교육과정, 본원과 외부 연구기관(이하 '학.연'이라 부름) 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학.산.관'이라 부름)과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은 영상학 분야 내에 6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전공별 수여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술석사(M.A.) 및 학술박사(Ph.D.) 학위
2.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전문석사(M.F.A.) 학위
3. 영화 전공: 전문석사(M.F.A.) 학위
4. 미디어아트 전공: 전문석사(M.F.A.) 학위
5. 영상예술학 전공: 전문박사(D.F.A.) 학위
6. 문화기획 전공: 학술석사(M.A.) 및 학술박사(Ph.D.) 학위

② 학술석사(M.A.) 및 학술박사(Ph.D.) 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의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운영원칙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④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2개 전공주임교수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전공

변경이 허가된다. 단, Ph.D.과정과 D.F.A.과정 간의 상호 전공변경은 불가하다.

⑤ 본 대학원의 정원은 석사학위과정 44명,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7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 3 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이 있다.

제7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와 필요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8조(등록)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최소 4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이 후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최소 2학기 동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6학기의 정규등록과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학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과 졸업작품의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의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징계,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1조(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의 총 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5년 9월 이전 입학한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향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제12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①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④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⑤ 제16조 및 제17조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4조에 의해 제적처분 받은 자.

제14조(자퇴) 자진 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입학)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기는 재입학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제13조의 제4호 및 제5호, 제14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제 5 장 수업 및 학점

제16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4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3년(6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 2016년 9월 입학생부터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재학연한의 연장) 위 16조에 명시된 재학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해 학위논문과 졸업작품의 제출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의 재학연한 최종 학기말에 지도교수의 신청이 이루어지며,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제18조(이수과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으로 M.A.과정은 30학점, M.F.A.과정은 36학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으로 하며, 이 60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72학점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제20조(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1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과정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F, W, P, NP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등급	A <sup>+</sup>	A <sup>0</sup>	A	B <sup>+</sup>	B <sup>0</sup>	B	C <sup>+</sup>	C <sup>0</sup>	C <sup>-</sup>	F	W	P, NP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0	0	0
설명	우수			우량			양호			불량	Withdraw	청강, 연구

② 동일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22조(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1.7(C-)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 제 6 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수여

제23조(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운영은<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4조(학위논문 및 학위프로젝트) ① M.A.와 Ph.D.과정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M.F.A.와 D.F.A.과정의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과 학위프로젝트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5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① 석사학위과정

1.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인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이중 1학기 이상 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지도를 받은 자
5. 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재학연한이 4년(8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자 혹은 학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학연한을 연장받아 9학기를 등록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

1.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60학점 이상,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최소 2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한 자
5. 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제 16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혹은 제 17조에 따라 재학연한을 연장받아 초과학기를 등록한 자
7. 교외에서 발표한 업적물(논문, 작품)이 내규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

1.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
4.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최소 2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한 자
5. 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재학연한이 8년(16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자, 혹은 학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학연한을 연장받아 17, 또는 18학기를 등록한 자
7. 교외에서 발표한 업적물(논문)이 내규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자

제26조(학위수여) 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하며,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과정	세부전공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석사	<삭제>	<삭제>	<삭제>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학석사(영상커뮤니케이션)	M.A.(in Visual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학석사(커뮤니케이션디자인)	M.F.A.(in Communication Design)
	영화	영상학석사(영화)	M.F.A.(in Cinema)
	미디어아트	영상학석사(미디어아트)	M.F.A.(in Media Art)
박사	문화기획	영상학석사(문화기획)	M.A.(in Cultural Planning)
	<삭제>	<삭제>	<삭제>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학박사(영상커뮤니케이션)	Ph.D.(in Visual Communication)
	영상예술학	영상학박사(영상예술학)	D.F.A.(in Visual Arts)
	문화기획	영상학박사(문화기획)	Ph.D.(in Cultural Planning)

제26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28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하며, 그 절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9조(학위기 양식)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 7 장 연구 과정**

제30조(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1조(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1년간 이수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8 장 상 별**

제33조(장학금 지급)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34조(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위원회) 재학생에 대한 징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할 경우, 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 제 9 장 조 직

제36조(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7조(분야 주임교수) 본 대학원의 제3조에 규정된 분야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8조(전공 주임교수) 본 대학원의 제3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9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분야별 주임교수,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0조(대학원운영위원회) 본 대학원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과 심의사항,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원장과 분야 주임교수 2인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본원의 규정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0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석사·박사·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1조(겸임교수) ① 본 대학원은 교내·외의 관련학과 교수를 겸임교수로 둘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겸임교수도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및 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42조(영상제작센터) 영상제작센터는 본대학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연구소) 본 대학원은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 10 장 준 용 규 정

제44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과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4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2호, 제26조)은 2012년 10월 23일부터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2호, 제26조)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7)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6조의 2, 제40조의 2)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5조)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1호)은 2016년 전기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6호)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 것으로 본다.
- (1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항, 제4항 항번호 변경, 제16조 제1항 항번호 신설)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6조)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6조의 언론학 전공 삭제, 제3조 제5항의 학생정원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제3조 및 제26조 문화기획 전공 신설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7년 3월 1일 전에 본 대학원 언론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칙 상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과 같이 언론학 석사(M.A. in Communication)학위와 언론학 박사(Ph.D. in Communication)학위를 수여한다.